

# 회의비 및 식대 집행 내규

제정 2020. 2. 24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비 및 식대의 집행·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정의)

- ① “회의비”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진과 외부인사의 회의 시 집행한 경비를 말한다.
- ② “식대”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진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말한다.
- ③ “외부인사”라 함은 연구참여진 외의 교외인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본 내규를 따른다. 단,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준수한다.

## 제4조(집행기준)

- ① 회의비 및 식대의 1인당 상한액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.

구분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원	외부인사
회의비	30,000원	30,000원	30,000원
식대	15,000원	10,000원	집행불가

- ② 회의비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야근식대는 평일 17시 이후에 2시간 이상 근무시 집행 가능하며, 야근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특근식대는 주말 및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시 집행 가능하며, 특근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회의비 및 식대의 영수증 결제 시간은 23시를 넘지 않도록 하며,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은 집행·정산할 수 없다.

제5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2020. 2. 24)

본 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